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검 토 보 고

<자율방범대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등 근거마련>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8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Ⅰ. 제안경위

가. 박정현의원안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07. 18.
3. 회 부 일 : 2024. 07. 19.

나. 이만희의원안

1.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07. 22.
3. 회 부 일 : 2024. 07. 2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정현의원안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만희의원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박정현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신 설>	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사용·양여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인해 범죄예방 등 치안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지도 등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022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직 및 구성, 그 대원의 결격사유, 활동범위, 복장·장비, 지도·감독·훈련, 중앙회등 설립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치안환경의 안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지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등 거점 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1)]

이에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중 자율방범대에만 국·공유 재산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2)]

---

1)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4,442개 조직에서 8만 7,560명이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회 1개 △연합회 16개 △연합대 271개 △자율방범대 4,154개 등록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체	4,442	483	193	171	158	92	128	74	28
대원	87,560	8,721	2,631	3,496	2,962	1,730	2,085	2,087	495
경기南	경기北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0	201	266	219	311	303	340	470	396	39
11,921	3,583	6,067	4,640	6,130	6,306	6,846	9,604	7,428	828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단체에게 국가·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사무실 용도로는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 그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별표를 개정해야 하는바, 관련법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3)]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과 달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이 특례를 제한하는 일반법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특례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이 동 위원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임.[4)]

동 개정안에 대한 부처 의견으로 경찰청은 현행법상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우 사무실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내용으로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49호,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112호)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4)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배준영 의원 및 한병도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34호, 의안번호 제2202848호).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들에 찬성하는 입장임.[5]

기획재정부는 21대 국회에서[6] 자율방범대의 경우 특례의 적용대상 및 장소가 광범위하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자율방범대 업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통해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대부·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등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

5) 구체적으로는 이만희 의원안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임.
6)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515, 22.11.29)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